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68호

「주택법」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3. 2. 3.

국토교통부장관

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

성능검사기관 명칭	대표자	주 소	지정일자
국토안전관리원	김일환	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128번길 24	2023.2.3.